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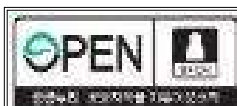
 국토교통부		보도해명자료	
		배포일시	2019. 4. 9(화) / 총 1매(본문 1매)
담당 부서	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	담당자	• 사무관 김리숙, 주무관 고재훈 • ☎ (044) 201-4477, 4472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임대료 기준은
올해 10월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해당됩니다.

- ☐ '19. 4.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,
-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를 최초임대료(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준 임대료)로 보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.
- ☐ 동 개정 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('19.10월경)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며,
-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등록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파이낸셜뉴스, 4.9) >

- ◆ “과거 임대차계약서 없는데...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 소급적용 가능할까”
-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최초계약 기준을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으로 소급 적용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간 임대정책과 김리숙 사무관(☎ 044-201-447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